



도민이 중심  
신뢰받는 의회

제41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 
(제1차 교육위원회)  
2024. 1. 24.(수) 10:00

# 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교육위원회  
수석전문위원

#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: 충청북도교육감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: 2024년 1월 15일

○ 회부일자: 2024년 1월 16일

3. 제안이유

○ 본청 내 한시기구 설치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한시 정원으로 책정하고자 함

4. 주요내용

가. 본청 내 한시기구 설치에 따른 한시정원 책정 및 존속기한 설정

1) 미래교육추진단 13명(시행일~2027. 2. 28.)

나.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: 변동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동 조례 개정안은 「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18조에<sup>1)</sup> 근거하여 2024. 3. 1.자 조직개편으로 본청 내

<sup>1)</sup> 제18조(한시정원) ① 교육감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 기간 후에 종료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7조제1항에 따른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한시정원을 둘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그 한시기구의 존속기간이 끝나는 날에 소멸된다.

③ 한시정원은 한시정원이 아닌 정원으로 상계(相計)하여 조정할 수 없다.

한시기구를 설치함에 따라 한시정원 책정 및 존속기한을 설정하기 위한 것임

- 안 제3조제3항은 한시기구로 설치되는 ‘미래교육추진단’을 기획국에 편제하여 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·교육연구관 1명,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·교육연구관 및 장학사·교육연구사 5명, 일반직 5급 이하 7명 등 총 13명으로 정원을 책정하여 2027년 2월 28일까지 운영하는 것임
- 이는 교육감 핵심 공약인 다채움 플랫폼 사업을 현재 교육연구정보원 다채움 구축운영팀에서 관장하던 것을 본청으로 이전 및 확대·개편하는 것이며, 오늘 3월부터 본격적인 학교 현장 적용에 따른 철저한 대비와 다채움 시스템의 고도화·안정화 사업을 유기적,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됨
- 한시기구 설치에 따른 13명의 정원은 기존 지방공무원 정원을 유지한 채 2024. 3. 1.자 조직개편 및 업무조정으로 효율적인 인력 재배치를 통하여 책정한 것이며, 총액 인건비 증가 요인이 없는 인력 운영이라는 점, 상위 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점 등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

---

④ 한시정원과 직급별 정원은 해당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

⑤ 한시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한시정원만을 두는 경우에는 최소한 1년 이상의 업무량이 있어야 한시정원을 책정할 수 있다.

⑥ 제5항에 따른 한시정원의 존속기간은 3년의 범위에서 해당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

⑦ 제6항에 따른 한시정원의 존속기간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 차례만 할 수 있다.

- 다만, 한시기구 존속기한을 3년으로 설정한 바, 사업의 조기 안착 및 기반 조성을 조속히 추진하여 존속기한 준수와 한시정원 조정 등에 따른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용이 필요함